

2020년 2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2건, 8억 25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

○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당이득 반환소송 : 배상금 1억 31백만원

- 도로개설(확장)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주택 공급 시, 도로·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.(※ 구 토지보상법 제78조)
-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공급주택 공급 시,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1심, 2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를 예비비로 지급함.
- 소송 종결 후 발생하는 이자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판결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음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131,111,660	
도로계획과	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	배상금 등 (305-01)	131,111,660	'20.06.12

○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 소송 : 배상금 6억 94백만원

- 이번 예비비를 지급한 사건은 「선사로~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」의 시공사 대저건설이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(약 35개월)되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피고인 서울시가 공사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, 계약된 공사 중 공사기간이 연장된 7, 8, 9차 공사에 대해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.
- 법원에서는 준공금 지급 이후 간접비를 청구한 7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불인정하였으나 8, 9차 공사분은 준공금 지급 이전에 적정하게 간접비가 청구되었기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음.
-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,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와 관련된 유사판례(대법원96다1733 등)들이 있어 원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 포기하였으며,
- 소송 종결 후 발생하는 이자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판결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음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도로계획과	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	배상금 등 (305-01)	694,066,801	'20.06.26.